

충청북도평생학습관운영에관한조례안

의안 번호	334
----------	------------

제출년월일 : 2000. 9. .
 제출자 : 충청북도교육감
 관련부서 : 교육국 평생교육체육과

제정사유

사회교육법이 폐지되고 2000. 3. 1부터 평생교육법이 시행됨에 따라 평생교육 기회 확대를 통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평생교육법 제13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서 정한 평생학습관의 지정 운영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자 함.

주요골자

- 교육감은 평생학습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(기관)을 평생학습관으로 지정 운영함.(안 제2조)
-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함.(안 제3조)
 1. 평생교육에 관한 연구
 2.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연수
 3. 평생교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·제공 및 평생학습의 상담
 4. 지역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·운영
 5. 기타 평생학습에 관한 사항
- 교육감은 평생학습관으로 지정된 기관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음.(안 제4조)
- 평생학습 운영자는 강좌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이용자에게 징수할 수 있음.(안 제5조)

제정근거

- 평생교육법 제13조 제4항

조례안 : 불 임

참고사항

- 관계법령발췌서 : 불임

충청북도평생학습관운영에관한조례안

충청북도평생학습관운영에관한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.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충청북도 평생학습관을 지정·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

제2조(운영) 교육감은 평생학습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(기관)을 평생학습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한다.

제3조(기능)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.

1. 평생교육에 관한 연구
2.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연수
3. 평생교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·제공 및 평생학습의 상담
4. 지역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·운영
5. 기타 평생학습에 관한 사항

제4조(지원) 교육감은 평생학습관으로 지정된 기관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제5조(사용료 징수) 평생학습관 운영자는 강좌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이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.

제6조(운영세칙)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평생학습관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.

부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계 법령 발췌서

□ 평생교육법제13조(평생교육센터 등의 운영)

③교육감은 관할구역안에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능을 수행하는 평생학습관을 운영하여야 한다.

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생학습관의 운영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되, 지역의 특성에 따라 평생교육시설 등을 활용할 수 있다.



"잠깐! 개인정보를 보호합니다."

충청북도교육위원회

우361-703 / 주소 청주시 흥덕구 산남동 4-11/ 전화 (043)290-1229 / 전송(043)292-1525
충청북도교육위원회 의사과장 이상기 의안담당 연승흠 담당자 이찬동

문서번호 의사 81433 - 182

시행일자 2000. 09. 08.

(공개여부) 공 개

수신 충청북도교육감

참조 기획관리과장

선람			지시	
접수	일자 시간	2000. 9. 8.	결재	
	번호	3989		
처리과	기획관리과		공람	
담당자				
심사자			심사일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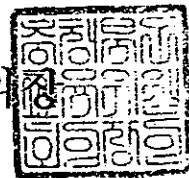
제목 의안이송

충청북도교육위원회 제1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(2000. 9. 8.)에서 의결된 의안을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송합니다.

의안번호	안 건 명	심의결과
119-1	충청북도평생학습관운영에관한조례안	원안가결
119-2	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회변경계획안	원안가결
119-3	2000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·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	수정의결

덧붙임 : 의안 각 2부. 끝.

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





충청북도교육청 공고 제 2000 - 84 호

충청북도의회 부의안건

지방자치법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의회에 부의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00년 9월 8일

충청북도교육감

부 의 안 건	주 요 골 자
<p>○ 200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·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</p>	<p>○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8,115억 4,114만 6천원에서 세입·세출예산 각각 231억 6,704만 4천원이 증액된 8,347억 819만원으로 편성</p> <p>○ 세입예산은 국가부담수입 170억 3,598만 4천원, 지방자치단체일반회계부담수입 17억 1,130만 2천원, 지방자치단체교육비특별회계부담수입 44억 1,975만 8천원 증액</p> <p>○ 세출예산중 학교교육 220억 7,155만 2천원, 문화 및 평생교육 4억 374만 7천원, 교육행정 169억 4,855만 8천원, 기타경비 28만 7천원을 증액하고, 급여·복지 11억 1,059만 2천원, 예비비 151억 4,660만 8천원을 감액</p>

<p>○ 충청북도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</p>	<p>○ 교육감은 평생학습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(기관)을 평생학습관으로 지정 운영</p> <p>○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함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1. 평생교육에 관한 연구2.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연수3. 평생교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·제공 및 평생학습의 상담4.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·운영5. 기타 평생학습에 관한 사항 <p>○ 교육감은 평생학습관으로 지정된 기관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음</p> <p>○ 평생학습 운영자는 강좌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이용자에게 징수할 수 있음</p>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